

1. 개정이유

21세기에 들어서서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후군(2003)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用に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 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 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호 중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을 “감염병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 는 법정 <u>감염병자가 철도종사 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u>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 ----- ----- -----. 1. (현행과 같음) 2. ----- --- <u>감염병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u>가.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 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u> <u>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제2의3호 따라 질병관리 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수립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 는 행위</u>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